# 저작권보호기간 안내서

# 목 차

Ι.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1
1.	저작권 보호기간 규정의 의의	2
가	h.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 ······	·····2
	ł. 보호기간의 규정 ·····	
디	ł.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3
라	ł. 보호기간연장의 추이 ·····	4
ㅁ}	아. 보호기간 규정의 개정 연혁	5
0	기기에 시기시 나주에게	c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가. 보호기간의 시작과 끝	
	나. 공표 시를 기준으로 기산하는 경우	
	1)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2) 업무상저작물	
	3) 영상저작물	
	4)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가. 기타 보호기간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저작물 ***********************************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	
	3) 2차적저작물	
라	P. 보호기간의 기산 방법 ·····	12
	1) 원칙	
2	2) 사망시점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여부 판단	·····12
3	3) 사망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3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15
가	ㅏ.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계산	·····15
	· · · · · · · · · · · · · · · · · · ·	
	1) 특례 규정의 내용 ···································	
	2) 특례 규정의 이유 ·····	
	3) 특례관련 위헌 논란	

4. 오	미국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	9
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	9
나.	국가 간 보호기간이 상이한 경우 보호기간의 적용2	0
다.	회복저작물	1
라.	외국 음반의 보호기간	3
마.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기간2	4
1)	영국	4
2)	유럽연합(EU)	5
3)	미국	6
4)	일본	8
II.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3	4
Ⅲ.	별첨 - 법령 및 조약 ······5	5
1.	저작권법상 보호기간 규정 관련 연혁입법5	5
2.	주요 조약별 저작권 보호기간 관련 규정7	1

#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 1. 저작권 보호기간 규정의 의의

#### 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 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해줌으로써 창작의욕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창작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규정하는 것임
- 이러한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임.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허군(1569~1618)의 홍길동전과 같은 고전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임

## 나. 보호기간의 규정

- 저작권법은 제39조 내지 제44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허권 등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저작권은 주로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표1. 주요 지식재산권의 권리 존속기간 비교]

권i	리 종류	기산점	존속기간	비고
	특허권	출원일	20년	
산업	실용신안권	출원일	10년	
재산권	상표권	등록일	10년	10년씩 갱신가능
	디자인권	출원일	20년	
저작권		저작자 사망	70년	사망 다음해부터 기산

○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 기간과 대상 저작물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함께 소멸함
  -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 (제14조 제1항)
  - 참고로 1957년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영구히 존속한다고 규 정하였음(동법 제29조)
- 사망으로 저작인격권 자체는 소멸해도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된다고 해석함. 다만, 그 존 속기간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까지 존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아래 베른협약 관련 규정 참고)
- **저작인접권중 실연자의 인격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실연자의 사망과 더불어 종료되는 것으로 봄<sup>1)</sup>

#### ※ 베른협약 중 저작자 사후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6조의2)

- (1)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 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2) 전 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u>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u>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 후에 전 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국가는 이러한 권리 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3) (생략)

(요지) 적어도 저작재산권의 만기까지는 보호되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유보조항을 두어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동안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라. 보호기간연장의 추이

- O 베른협약이 저작자 사후 50년이라는 보호기간을 채택한 이래 1994년 TRIPs 협정이나,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 보호기간은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추세에 있음

[표2. 주요국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보호기간	국가	
저작자 사후 50년	일본, 중국, 캐나다, 대만,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남아프 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저작자 사후 70년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 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 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대한민국 등	
기타 특별한 기간	멕시코(100년), 콜롬비아(80년), 인도(60년)	

<sup>1)</sup>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5판), 2017, 312쪽.

#### 마. 우리나라 보호기간 규정의 개정연혁

- O 1957년, 저작권법에서 저작자 사후 30년 보호 원칙을 규정함
  - 1957년 법상 사진저작물은 보호기간이 10년이었음(→ **^세 13**).
  - 다만, 다른 예술저작물을 복제한 사진이나 학술예술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을 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과 같은 보호기간이 부여되었음
- 1986년, **사후** 50년으로 늘리고, **저작인접물을 분리**하여 기산일로 부터 20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함
- O 1994년, 저작인접물(실연, 방송, 음반)도 50년으로 일치시킴
- O 2006년, 음반에 관하여 보호기간 기산일을 **발행일로** 함
- 2011년,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 이후 저작물과 저작인 접물 모두에 대해 70년으로 연장하되, 적용시점은 2013.7.1.(저작 인접권은 2013.8.1.)로 함
  - 2011.6.30. 법률 제10807호로 공포된 개정저작권법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011.7.1.부터 발효됨에 따라, 협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보호기간연장으로 출판, 영화 등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를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둠
  - 2007.4.2. 타결된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11110호로 공 포된 개정법(2011.12.2. 일부개정, 2012.3.15.시행)에서는 음반 및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이미 발 효되었던 한·페루 FTA에 따라 2013. 8. 1.로 맞춤(부칙 제1조)
- ※ (참고) 이때 보호기간연장에 방송이 제외된 것은 미국이 저작권법에서 방송사업자를 별도로 보호하지 않아 한·미 FTA에서 방송이 제외되었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 당시 WIPO의 조약 마련 논의2)가 진행 중이 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3)

<sup>2)</sup> WIPO에서는 1996년 12월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정문제에 관한 외교회의'의 권고에 따라 디지털 시대 방송사업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조약 제정을 논의 중임

##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가. 보호기간의 시작과 끝

-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시기(始期)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제10조 제2항), 창작한 시점이 저작권 보호기간의 시기가 되는 것임
- **저작재산권의 좋기(終期)**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9조 이하 에서 규정하고 있음
  - 종기 결정 기준에 대하여 우리 법은 '사망 시 기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공표 시 기산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즉,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함을 원칙으로 하고(제39조 제1항), 사망시점을 잡기 어려운 무명·이명저작물(제 40조), 업무상저작물(제41조)과 영상저작물(제42조)에 대하여는 공표시점으로부터 70년간 존속 (→ 사례 1)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 망한 후 70년간 존속함(제39조 제2항) (→ **사례 3**)

## 나. 공표 시를 기준으로 기산하는 경우

### 1)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O 무명(無名)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명(異名)저작물은 필명, 아호, 예명 등 실명을 대신하여 표시하 는 경우의 저작물을 말함

<sup>3)</sup>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집」(2011.12.14.), 21쪽.

- 무명·이명저작물은 저작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
- 저작권법은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 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제40조 제1항 본문)
  -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봄(제40조제1항 단서) (→ **사례 2**)
- 이명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이명의 보유자가 저작자로 추정되고 (제8조 제1항⁴), 그 사망시점을 확인하기 용이한 경우가 많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인 경우에만 해당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저작물이라도 다음과 같이 일 정한 경우에는 사망 시 기산 원칙이 다시 적용됨(제40조 제2항)
- ⓐ 공표 후 70년의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 경우
- ⑤ 공표 후 70년의 기간 내에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 2) 업무상저작물

<sup>4)</sup>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sup>1.</sup>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sup>2.</sup>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 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생략)

- 저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유일한 예외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됨에 따라 사망 시 기산주의를 적용할 수 없어 '공표'한 때부터 기산하게 됨 (→ 사례 10.15)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함(제41조). 장기간의 미공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함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사용자로서 자연인인 경우**에도 **공표** 시 기산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sup>5)</sup>

#### 3) 영상저작물

- 영상저작물은 창작과정에서 다수의 창작자가 관여함에 따라 **저작** 자를 결정하는 문제가 매우 복잡함
  -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상저 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음(제99조 이하)
-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은 진정한 저작자를 추적하여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지 않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공표한 때** 로부터 70년간으로 규정함(법 제42조 제1항)
  - 다만,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함(법 제42조 제2항)

#### 4)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 공표 시를 확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적간행물임. 즉, 잡지, 연재소설 등과 같이 계속・순차적으로 간행되는 저작물의

<sup>5)</sup>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2014), 621쪽.

공표시기를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a) 축차저작물<sup>6)</sup> :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
  - **매 책, 매 호 또는 매 회 등의 공표 시**로부터 기산함(제43조 제1 항 전단)
  - 주간·계간 잡지, 각종 연감, 연차보고서, 매회 줄거리가 독립 된 TV연속극 등이 해당됨
- (b) 순차저작물 : 일부분씩 순차로 공표하여 최종회로써 완성하는 저작물
  - 최종 부분의 공표 시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순차저작물중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는 기 공표된 맨 뒤 부분을 최종 부분으로 봄(제43조 제2항)
  - 신문 연재소설, 일반적인 TV드라마 등이 해당됨
- (주의점) 계속적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것
   은 아니며, 공표시점을 적용해야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주의해
   야 함(같은 조 제1항) (→ 사례 6)
  - 즉, 무명저작물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등이 축차·순차적으로 공표되는 경우임
  - 다만, 위 규정이 영상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지만, **영상저작물도** 연속극이나 연재만화영화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공표되는 것 이라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는 의견 있음<sup>7)</sup> (이하 이 견해에 따름) (→ **사례** 5)

<sup>6)</sup> 축차저작물이란 용어사용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박성호, 앞의 책 624쪽).

<sup>7)</sup> 오승종, 「저작권법」(전면개정판), 박영사(2014), 2016, 920쪽.

#### 다. 기타 보호기가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저작물

####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과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프로그램 공표 후 50년으로 규정 하여 일반저작물과 달리 '공표'를 기준으로 하였음(구,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 참조)
- O 베른협약이나 TRIPs협정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음에 따라.
  - 공표 기준에서 저작자 사후 기준으로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됨(2006.12.28.개정)
- 다만, 오늘날 제작되는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은 법인 등에 의한 업무상저작물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공표 후 70년간 보호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사례 3)

## 2)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 일반적으로 DB는 저작물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에 따른 보호가 아니라 **투자를 기반으로 한 보호의 필요** 있음
  - 대표적 입법례가 **EU지침**<sup>8)</sup>으로 창작성과 관계없이 편집물을 15 년간 보호하고 있음
- 우리 저작권법은 DB에 대하여 2003년 저작인접권에 유사한 권리로

<sup>8)</sup>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6/6/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즉, DB제작자에 그 DB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제93조 제1항)하고,
- 이러한 권리는 DB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다음 해 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제95조 제1항) (→ 사례 4)
- O DB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DB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제95조 제2항)함

#### (주의점)

- ② 지엽적인 수정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DB를 갱신한다면 **갱신시점부터 새로운 보호기간이 추가**될 수 있음
- ⑤ DB도 각 개별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함에 창작성이 있을 경우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저작물과 같은 보호 기간 원칙이 적용됨을 주의

#### 3) 2차적저작물

-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므로(법 제5조), 해당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새롭게 기산**됨 (→ **시례** 11)
- 다만, 2차적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새로운 창작성은 일
   반적인 저작물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창작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sup>9)</sup> (→ 사례 12)

#### 라. 보호기간의 기산 방법

#### 1) 원칙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 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함(제44조)
  - 이것은 장기의 권리 존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방식주의에 따라 등록을 효력 발생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이나 창작, 공표의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임

#### ※ 1962. 12. 31.에 사망한 저작자와 1963. 1. 1.에 사망한 저작자

1962.12.31.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종전 법에 따라 사망한 해의 다음 해인 1963.1.1.부터 50년이 되는 2012.12.31.까지 보호되고, 2013.1.1.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1963.1.1.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 종전 법에 따르면 사망한 해의 다음 해인 1964.1.1.부터 50년이 되는 2013.12.31.까지만 보호될 예정이었으나, 2013.7.1. 개정법 시행으로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2033.12.31.까지 보호받게 됨

즉, <u>저작자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우 작가 사망시기가</u> 1962.12.31. 이전 사망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됨

## 2) 사망시점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여부 판단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의 개정과 함께 계속하여 연장되 어 왔음
  - 저작자 사후 30년(1957.1.28.~) → 사후 50년(1987.7.1.~) → 사후 70년(2013.7.1.~)

<sup>9)</sup>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5, 210쪽.

- O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급적용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어 적용시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음
  - 보호기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저작자 사망시점과 함께 그** 시점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을 확인해야 함
- 3) 사망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납북 작가와 같이 사망을 추정할 수 있으나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구체적인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저작자는 확인된 것이므로 무명・ 이명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움
  - 저작자의 사망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민법상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임<sup>10)</sup>

#### [참고]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제도

- \* 실종선고제도 :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원칙 5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민법 제27조~29조)
- \* 인정사망제도: 수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시신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 망으로 기재하여 추정하는 제도(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소설가 이광수처럼 **일정시기에 사망하였다는 보도나 관련 인사** 의 **중언 등을 토대로 사망 시기를 정한 판례**<sup>11)</sup>\*가 있음

<sup>10)</sup> 임원선, 앞의 책, 196쪽.

<sup>11)</sup> 서울고등법원 1993.12.7. 선고 93나7923 판결("원고는 소설 '무정', '흙', '사랑', '꿈'의 저작권자이고, (중략) 원고는 1892. 2. 1.생으로 현재 살아있다면 101세 남짓 되는 사실, 원고는 1950년 6. 25.사변 당시 납북되었는데 당시 열이 39도를 오르내리며 혈압은 200에 이르는 상태였던 사실, 1991. 7. 26.자 중앙일보는 전 북한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원고가 1950. 12. 만포인민군병원에서 병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현재 평양 삼척구역 원신리에는 원고의 묘소가 있고 묘비 뒷면에 사망일자가 1950. 10. 25.로기록되어 있는 사실, 부재자인 원고의 아들로서 재산관리인인 이영근이 1991. 7.경 북

#### [참고] 저작자 사후 계산 방식의 적용 예외 해외 사례12)

- 외국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을 단순하게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 O 예를 들어 〈피터 래빗〉그림책으로 유명한 영국 동화 작가 베아트릭 포터(Beatrix Potter)는 1943년에 사망하여 포터의 작품들은 2013.12.31. 에 저작권보호가 만료되었으나, 2016년에 최초로 발간되는 포터의 「장화 신은 고양이 이야기(The Tale of Kitty-In-Boots)」는 영국의 1988년〈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A)〉에 따라<sup>13)</sup>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고, 해당 작품은 1989년부터 기산하여 2039.12.31. 까지 보호됨
- 다만, 개별 보호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보호를 받으므로 영 국에서 위와 같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하여도 해외에서 동일한 보호 를 받는 것은 아님

한을 방문하여 원고의 묘소를 확인하고 돌아온 후 원고의 가족들은 1950. 10. 25.을 원고의 기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0. 10. 25. 사망했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략) 원고의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사망일로부터 30년이 지난 1980. 10. 25.에 소멸되었다고 할 것")

<sup>12)</sup> http://cpcstory.blog.me/220655704405

<sup>13)</sup> CDPA 부속서(schedule1) 제12조는 동법이 발효하는 1989년 이전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저작자가 사망하고 1956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CDPA 발효 이전에 존재하는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CDPA가 발효하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나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가.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계산

-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일정한 존속기간을 규정(법 제86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의 보호기간이 다름을 주의

[표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비교]

구분	권리의 발생	보호기간의 기산	
		- 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	
실연	실연을 한 때	-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	
방송	방송을 한 때	방송을 한 다음 해부터 <u><b>50년</b></u>	
음반	음을 맨 처음 음반에 <u>고정</u> 한 때	- 음반을 <u>발행</u> 한 다음 해부터 70년 - 음을 음반에 처음 고정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 년이 경과한 때 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다음 해부터 70년	

- 실연·음반은 1957년 제정법에서 저작물로 분류<sup>14)</sup>하였고, 1986년 개정법에서도 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적용함
- O 실연·음반 관련 유의점

<sup>14) 1957</sup>년 저작권법 제2조(저작물)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 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 ①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을 한 때에 발생하고 보호기간도 그 다음 해부터 70년간이나,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 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 간 존속됨(제86조 제2항 제1호) (→ **사례 17**)
  - 즉, 가수가 무대 공연을 했을 때에는 무대 공연 시부터 보호기간 이 시작되지만, 해당 공연이 음반으로 발행될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보호기간을 기산하게 됨
- ② 음반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지만, 그 권리 보호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게 됨
  - 2006년 개정 저작권법(2007.6.29. 시행)에 반영된 것으로,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이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의 발행시점 으로 규정<sup>15)</sup>함에 따른 것임
- 1987.6.30.까지 공표된 음반에 대한 권리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대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단체명의의 저작물인 경우는 발행한 다음 해부터 30년간 보호됨<sup>16)</sup>
  -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음반은 저작물로서 법 시행일

<sup>15)</sup>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 Article 17. Term of Protection

<sup>16) 1957</sup>년 제정 저작권법 상 음반을 포함한 저작인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음. 따라서 1987.7.1 전의 저작인접물은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경우 사망 후 30년, 단체 명의인 경우 발행된 때로부터 30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임. 이 경우 1957년 제정법 상 저작인접물이 단체명의인 경우에는 1987.7.1. 시행 개정법상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보다 짧게 됨. 그러나 1987년 개정법상 단체명의저작인접물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 저작인접물만 존재하고, 따라서 1957년 제정법상 저작인접물이 단체명의인 경우에는 57년 법의 보호기간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987년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1987년 법상 저작인접물(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1987.7.1.)을 기준으로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 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여 1987.7.1.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여전히 구 저작권법의 규정이 적용됨 (→ 사례 9)

- 1982.12.31. 이전에 **단체 명의**로 **발행된 음반**의 경우에는 저작인 접권이 소멸된 상태임
- ※ 1983.1.1. 발행된 음반은 다음 해인 1984.1.1.부터 기산되어 30년이 되는 2013.12.31.까지 보호되고, 이 경우 2013. 8. 1.부터 적용되는 개정 저작권법 이 적용되어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됨
- 1987.7.1. 이후 공표 음반은 1987년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고정 (녹음)된지 20년이 지난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12.2.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에 의해, 1994.7.1.이후에 녹음된 음반과 동일하게 50년간 보호되었음
  - 한편, 이 개정법에서 법 시행 전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부칙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고 규정함

## 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특례(보호기간의 회복)

- 1) 특례 규정의 내용
- 2011년 개정 저작권법(2013.8.1.시행) 부칙 제4조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1987.7.1.~1994.6.30. 사이 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음
- 회복되는 보호기간은 대상 **저작인접권이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으로 함(→ 시례 14)

### 2) 특례 규정의 이유

- 1986년 개정법(1987.7.1.시행)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1994년 개정법(1994.7.1.시행)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소급 적용을 배제함
- 이에 따라 1987.7.1.~1994.6.30. 사이에 발행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기간에 발행된 음반 에 비하여 짧은 보호기간(20년)이 적용되는 불평등이 발생
  - ※ 위 기간중 발행된 음반들은 '유재하', '들국화', '부활', '동물원', 봄·여름·가을 '겨울', '양희은', '이문세', '서태지와 아이들', '김광석', '듀스', '넥스트' 등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음반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3) 특례관련 위헌 논란

- 특례를 통한 소급 보호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는 주장<sup>17)</sup>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별첨 결정문 참고)
-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음원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사람으로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가 자신의 음반제작 및 판매에 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함

<sup>17)</sup> 박성호, 앞의 책, 403쪽.

## 4. 외국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 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

-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제3조 제1항)고 하여 기본적으로 외국저 작물을 국내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음<sup>18)</sup>
- 우리나라는 1987.10.1. 세계저작권협약(UCC)을 시작으로, WTO TRIPs,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WCT) 등 주요 국제 조약이 순 차적으로 발효(아래 표 참고)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조약 중 하나라도 가입한 국가의 국민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보호됨

[표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주요 조약 현황]19)

\* ( )는 우리나라 효력발생일

(/2 1 4 1 4 4 1			
구분	저작권 분야	저작인접권 분야	
	WIPO 저작권조약 (2004.6.24.)	WIPO 실연.음반 조약 (2009.3.18.)	
	WTO TE	RIPs협정	
다자	(1995.1.1.)		
니시	베른협약	로마협약	
	(1996.8.21.)	(2009.3.18.)	
	세계저작권협약	제네바음반협약	
	(1987.10.1.)	(1987.10.10.)	
양자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sup>18)</sup> 북한의 경우 2003.4.에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우리 법원은 이와 상관없이 보호를 인정하고 있음

<sup>19)</sup> 가입여부 및 세부 내용 등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홈페이지(www.wipo.int) 확인이 가능

#### 나. 국가 간 보호기간이 상이한 경우 보호기간의 적용

- (상호주의,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법 제3조 제3항)
  - 또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법의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함(동조 제4항)
  -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200에 대한 예외**로서 실질적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임
  -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상호주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고 내국민으로 대우하는 것도 베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짧은 기간의 법칙, Rule of the shorter term) 국가별로 다른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방 국가가 보호해 주는 기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통상 더 짧은 보호기간이 적용됨(→ 사례 7.8)
  - (예)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는 그 기간까지만 보호해주면 되며, 반대로 보호기간이 사후 100년인 멕시코는 우리나라 기준인 저작자 사후 70년을 적용하게 됨
- O 베른협약 등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본국(source country, country of origin)' 및 '보호국(claimed country)'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sup>20)</sup>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도 당해 나라의 법이 자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함(베른협약 제5조 제1항)

- 본국은 최초로 저작물이 공표된 협약국 또는 저작물이 협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공표된 경우에는 **저작자가 자국 국민인 협약국**을 의미하고,
- 보호국은 저작물이 실제로 사용되어 **저작권의 보호가 청구되고 있는 협약국**을 의미함
- 본국과 보호국 사이에 저작권 보호기간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베른협약은 보호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보호국법주의)으로 규정(협약 제5조 제2항)<sup>21)</sup>
-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그 보호를 요구받는 나라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영역 내에서 그 침해행위가 발생** 한 경우이어야 함<sup>22)</sup>

## 다. 회복저작물

- 1957년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에서 처음으** 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하였음
  - 당시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한 저작물이 아니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었음
- 1986년 개정법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되, 그 조약이 우리나라에 시행되기 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도록 규정함 (동법 제3조)<sup>23)</sup>

<sup>21)</sup>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sup>22)</sup> 이해완, 앞의 책, 1254쪽.

<sup>23)</sup> 가입당시 UCC협약 제7조에 따르면 "이 협약은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에 있어서 이

- 이에 따라 당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에 세계저작권협약(UCC)이 발효된 1987.10.1. 이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하게 되었음
- 이후, 외국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TRIPs 협정 이 1995.1.1.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sup>24)</sup>함(1996.7.1.시행)
  - 개정 이전 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던 1987.10.1.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중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받도록 하였음(이를 "회복저작물"이라 부르며 음반 도 포함)
- 회복저작물 등의 주체는 저작자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됨
- TRIPs 협정 발효로 보호받게 된 회복저작물은 기존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만큼 저작물 이용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경과 조치를 둠
- 특히 TRIPs 협정이 국내에 발효된 1995.1.1.이전에 외국저작물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개정법 시행 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배포·공연·상영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례 19)
- 다만,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자는 2000.1.1.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4조 제3항).

협약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체약국에서 영구히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인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sup>24) 1995.12.6.,</sup> 일부개정 저작권법[시행 1996.7.1., 법률 제5015호]에서 소급보호를 부정한 1986년 법의 제3조 1항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에서 이른바 회복저작물 등 에 대한 소급보호를 규정

#### 라. 외국 음반의 보호기간

○ 외국 음반은 음반의 본국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나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 음반조약(WPPT)의 체약국이며, 본국의 저작권법에서 의해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법이 정하는 보호기간 동안 국내 음반과 동등하게 보호됨

[표5. 음반관련 국제협약]

구분	TRIPs	WPPT
보호대상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저작인접권자
성립년도 (한국가입연도)	1995. (1995)	1996. (2009.3.18)
보호기간	녹음 후 50년	녹음 후 50년(실연자) 발생 후 50년(음반제작사)
소급적용	0	×

- 국내 발행 음반과 마찬가지로 1987.6.30.이전에 발행된 음반은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개인 작성의 음반은 저작자 사후 30년간, 기업 등이 발행한 음반의 경우 발행 후 3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함<sup>25)</sup>
  - 저작인접권을 신설한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은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음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임(부칙 제2조 제2항)
- 외국인의 음반에 대한 소급보호를 규정한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음반이 국내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하여 국내 음반과 동일한 보호기간을 부여함(부칙 제3조)

<sup>25)</sup> 이러한 해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도 국내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한 것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미국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저작인접권이 없으며, **실연**, 음반, 방송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됨
  - 청각적인 실연, 음반제작 및 라디오 방송은 녹음물로서, 시청각 실연 및 TV방송은 '영화 그 밖의 시청각 저작물'로서 보호됨<sup>26)</sup>
  - 미국은 1971년 제네바음반협정과 1996년 WPPT등에 따라 저작 권법을 수정해왔으며, WPPT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
  - 한편, 미국은 연방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처음 적용받는 시점인 1972.2.15. 전에 발행된 음반에 대하여는 연방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각 주법을 따르게 되어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름을 주의<sup>27)</sup> (2067.2.15.일까지 적용)

## 바.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 1) 영국

-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 불리는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 (Statute of Anne)은 저작물의 출간(publication) 후 14년간 보호하고, 그 기간 후에도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14년을 보호 (이미 발행된 저작물은 21년)
- 1911년 '대영제국 저작권법 1911'을 제정하여 1887년 서명한 베른 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 이 법은 미국 등 여러 나라 저작권법의 모태가 됨
- 현 저작권법의 모태는 1988년 제정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권법'

<sup>26)</sup> 박성호, 앞의 책, 368쪽.

<sup>27)</sup> A Study on the Desirability of and Means for Bringing Sound Recordings Fixed Before February 15, 1972, Under Federal Jurisdiction (https://www.copyright.gov/docs/sound)

- O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 존속기간에 관한 규칙(Copyright and Duration of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2013)'을 통해 유럽 2011/77/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함
  - 이 규칙은 2013.11.1. 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규칙에 따라 영국에서 음반 및 실연자의 권리존속이 70년으로 연장됨

[표6. 영국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구 분	보호기간
어문,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 SW, DB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
영화저작물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 (영화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자중 가장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한 해 그 다음해부터 기산)
음반	제작 또는 공표 후 70년
방송	제작 후 50년
출판물의 판면 배열	출판 후 25년

<sup>※</sup> 사망, 제작, 출판, 공표 다음 해부터 기산함

## 2) 유럽연합(EU)28)

○ 유럽의 저작권의 법체계는 10개의 지침(directives)의 집합체이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 12.12.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을 통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규정함

[표7. EU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구 분	보호기간
일반저작권	저작자생존기간+사후 70년 - 공동저작물은 최후 생존 저작자 사망 시 기산
무명/이명저작물	공표후 70년
영상 또는	최후 생존 저작자 사망후 70년

<sup>28)</sup>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관련 유럽연합 지침」(2011) 내용 참조.

시청각저작물	(감독, 시나리오작가, 작곡가등의 공동저작자 표시 불문)
저작인접권	(실연자)실연한 날로부터 50년 (음반제작자) 음반 공표일로부터 50년
미공개저작물	저작물이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때부터 25년
비평적이고 과학적인 출판물	출판물이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30년

- 저작인접권은 실연 또는 음반고정 후 50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2006/116/EC 지침을 개정하는 2011.9.27.의 지침 2011/77/EU에서 **70년으로 통일** 
  - (신설) 가사가 있는 음악 작품: 공동저작자로의 표기 여부를 불문 하고 최후로 생존한 저작자(작사가, 작곡가)의 사망 후 70년
  - (개정) 음반과는 다른 방법에 의한 실연의 고정은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다면 그 권리는 최초 공개일 또는 최초로 공중에게 전달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0년
- 음반에 의한 실연의 고정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 중에게 전달된다면 그 권리는 최초 공개일 또는 최초로 공중에게 전달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70년

#### 3) 미국

- 1790년 최초의 연방저작권법은 영국 앤 여왕법과 동일한 구조, 즉 공표 후 14년간 보호되고, 저작자 생존 시 추가 14년이 인정됨
- 1831년에 이 기간을 28년으로 연장하였고, 갱신기간 14년까지 합 치면 42년간 보호됨
- O 1909년 갱신 보호기간도 28년으로 연장되어, 최대 56년간 보호됨

- 1976년 개정법(1978.1.1. 발효)에서는 저작자 수명을 기준으로 한 보호기간이 도입되면서 기간도 국제규범에 따라 저작자 사후 50 년으로 하였음
  - 업무상저작물, 무명·이명저작물은 **공표일로부터 75년 또는 창** 작일로부터 100년 가운데 짧은 기가 동안 보호함
- O **1998년**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sup>29)</sup>'을 통해 **사후 70년**까지 다시 확장함
  - 일반적인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업무상저작 등의 경우 저작물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짧은 쪽으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함
  -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2003년 합헌 판결을 내림<sup>30)</sup>

[표8. 현행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 개요]

법규정	적용대상		보호기간
§302	1978.1.1. 이후 창작저작물		저작자 생존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
		미공표 또는	저작자 생존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
§303	1978.1.1. 이전	미등록 저작물	('02.12.31.이전 보호기간 만료 시 '02.12.31. 까지 '02.12.31. 이전에 공표된 경우 '47.12.31. 까지)
§304	하산 창작저작물	저작물	저작권 최초 취득일로부터 28년 + 1차 존속기간(28년) 만료 1년 이내 기간 갱신 및 연장 신청 시 추가로 67년

<sup>29)</sup> 일명 '미키마우스 연장법'(Mickey Mouse Extension Act)으로도 불리는데, 이 법의 개 정 과정에 미디어기업인 월트 디즈니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데서 기인한 것임

<sup>30)</sup> Eric Eldred, et al., Petitioners v. John D.Ashcroft, Attorney General, 537 U.S.186, 194-196(2003), 미국 뉴햄프셔의 에릭 엘드레드(Eric Eldred)는 1999년 무료 인터넷 도서관인 '도버 퍼블리싱'을 개설하고 나다니엘 호돈과 헨리 제임스 같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게재하였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발되자 "미 의회가 대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지난 40년간 11차례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은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에 위헌심사를 요청한 사건

### 4) 일본

- 1899년 베른협약 가입 후 협약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을 공포(구 저작권법이라 불리는 일본 최초의 저작권법)하였으며, 1970년 현대적 저작권법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약 40여 차례 개정됨
- O 2015. 12.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sup>31)</sup>타결로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6. 3. 국회에 발의<sup>32)</sup>

[표9.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	-------

구 분	<b>보호기간</b> (사망 또는 공표 다음해부터 기산)	
일반저작물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50년	
무명 또는 변명(變名)저작물	저작물 공표 후 50년	
단체명의저작물	공표 후 50년(창작 후 50년 이내 공표되지 않은 경우는 창작 후 50년)	
영화저작물	공표 후 70년 (창작 후 70년 이내 미공표 시 창작 후 70년)	
저작인접권	실연, 발행, 방송 시점으로부터 50년	

- O 보호기간 관련 일본의 특수한 제도(전시가산제도)도 폐지 검토33)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근거, 연합국 국민의 저작권보호기간에 전쟁기간 약 10년(3,794일)을 가산해 줌

<sup>31)</su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 총 12 개 국가 간의 공동무역협정으로, 저작권 분야에서는 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②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③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정 손해배상금 도입 ④ DRM 우회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 ⑤ '삼진 아웃제' 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

<sup>32)</sup> TPP교섭참가국가에 일본 외에 협정체결을 위해 보호기간 연장을 추진한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임

<sup>33)</sup> http://www.cas.go.jp/jp/tpp/naiyou/pdf/sankousiryou2/160420 tpp sankou13.pdf 참조

## [참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 보호기간 적용 예시

- 1. 일반저작물로서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계산되는 저작물의 경우
  - ⇒ 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저작물은 보호기간 이 종료
- 2. 1957년 법상 저작물에 해당되나 사실상 저작인접물(음반 등)로서 개인이 저작자인 경우
  - ⇒ 사망 후 30년
  - ⇒ 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저작물(87년 법상 저작 인접물)은 보호기간이 종료
- 2-1. 위의 경우 단체 등이 저작자이거나 무명·이명저작물로서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경우
  - ⇒ 발행 또는 공연한 때로부터 30년
  - ⇒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종료
- 2-2. 단일 사진저작물의 경우
  - ⇒ 발행한 때부터 10년
  - → 저작자가 1976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저작물은 보호기간 이 종료

## [표10 : 유형별 저작권 보호기간 정리]

# [1957년 법 적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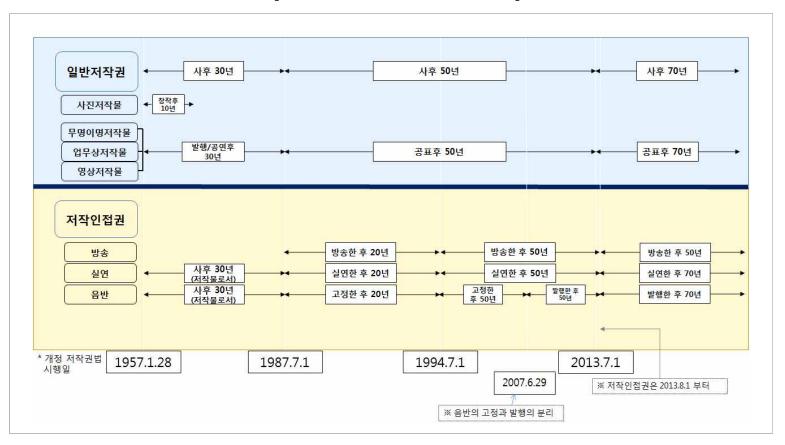
저작물의 유형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존속 기간	저작물 적용 예시		
단독 일반 저작물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30년	• 개인 1인이 창작한 논문, 그림 음반, 연주, 영화 등		
공동 저작물	' ' ' ' ' ' ' ' ' ' ' ' ' ' ' ' ' ' '		<ul><li>2인 이상 공저의 도서, 논문</li><li>글/그림 작가가 다른 만화</li><li>여러 명이 공동 작곡한 음악</li></ul>		
무명/이명 저작물	발행 또는 공연한 해의 다음 해부터	30년	•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그림, 소설 • 예명이나 필명을 사용하여 발행한 소설이나 음악		
관공서 학교, 회사 및 기타 사회단체가 저작자로서 발행 또는 공 연한 저작물	발행 또는 공연한 해의 다음 해부터	30년	<ul><li>회사가 저작자로서 발행한 책</li><li>사회단체가 저작자로서 개발한 게임</li></ul>		
	발행한 다음 해부터	10년	• 개인이 촬영한 사진작품		
사진저작물	(예외1) 예술상 저작권을 복제한 경우 원저작물과 동일한 기간보호 (예외2) 학문적·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 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저작시켰을 경우, 그 학문적·예술적 저 작권과 동일한 기간 존속				
계속적 간행물	매 책, 매 호, 발행일 로부터		• 회사가 발행하는 주간, 계간 잡지, 연감, 연차보고서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되는 경우는 최종부분 발행한 날로 부터	30년	• 대하 장편소설이나 신문연재 소설 • 잡지 연재 만화		

## [현행법 적용 시]

저작물의 유형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존속 기간	저작물 적용 예시
단독 일반 저작물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 개인 1인이 창작한 도서, 논문, 그림,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등
공동 저작물	최후 사망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ul><li>2인 이상 공저의 도서, 논문</li><li>글/그림 작가가 다른 만화</li><li>여러 명이 공동 작곡한 음악</li></ul>
무명/이명 저작물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	<ul> <li>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그림, 소설</li> <li>널리 알려지지 않은 예명이나 필명을 사용한 소설이나 음악</li> </ul>
	공표한 다음 해부터		<ul> <li>회사의 기획으로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매뉴얼, 디자인 영상 등</li> <li>회사의 기획으로 직원이 개발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li> </ul>
업무상 저작물	창작 후 50년 이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는 창작한 다음 해부터	70년	
	공표한 다음 해부터		<ul> <li>영상제작사가 만든 영화, 다큐멘터리</li> <li>드라마 제작사가 만든 TV드라마</li> <li>개인 창작 UCC 영상물</li> </ul>
영상 저작물	창작 후 50년 이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는 창작한 다음 해부터	70년	
계속적 간행물	매 책, 매 호, 매 회 등의 공표 다음 해 부터		• 회사가 발행하는 주간, 계간 잡지, 연감, 연차보고서
(※ 무명/이명 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 만 해당)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되는 경우는 최종부분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대하 장편소설이나 신문연재 소설    포털 연재 웹툰 만화

저작물의 유형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존속 기간	저작물 적용 예시
저작 인접 물	실 연	실연을 한 다음 해부터	70년	• 가수, 연주자, 개그맨의 공연
	음 반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	• 음반제작사가 만든 가수의 음반
	방 송	방송을 한 다음 해부터	50년	•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도서관에서 구축한 서지정보 DB     구직사이트가 구축한 국내 기업 DB     포털 제공 인물정보 DB

[표11. 보호기간 연장 추이일람표]



# □.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Q1. (원칙)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대표작 〈키스〉작품의 일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종이 가방을 디자인하려고 한다. 그의 저작권은 유효할까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2013.7.1.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었으나, 그 이전에 소멸된 저작권은 연장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1962.12.31.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용될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소멸하게 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대표적인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는 1918년에 사망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저작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Q2. (무명/이명저작물) 소설가 A는 예명 '고니'로 활동을 하면서 다수 작품을 남겼으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대중은 그가 실제 작가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후 그의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출판사 B가 1958.4월 발표된 그의 작품을 출간하려고 한다. 사망연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일까?

현행 저작권법은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법 제40조).

질문과 같이 공표된 작품의 예명을 사용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한 사망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공표된 후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 작품은 2008.12.31.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1958년+50년). 개정 전 법에 따라 50년 이 적용된다. Q3. (컴퓨터프로그램/공동저작물) 1989.4월에 나온 대표적인 국산 워드프로그램인 〈호글 1.0〉을 설치하여 써보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 한글 1.0〉은 서울대컴퓨터연구회 출신의 이찬진, 김택진 등 4명이 만든 워드프로세서 한글의 최초 상용버전으로 1989.4.24.에 출시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과거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프로그램 공표 후 50년간이었으나, 2009.7.23. 시행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에서 일반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생존기간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표시점으로 기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편〈호글 1.0〉은 창작 당시 위 4인이 공동 창작한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면 공동저작자중 마지막 사망자를 기산으로 하여 사후 70년이 적용될 것이다.

Q4. (데이터베이스) 2007년부터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UCC)를 게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똑같이 미러링(사이트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가는 행위)하는 N사이트를 발견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한다. 보호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최근 법원에서 UCC 사이트를 미러링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데이터 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며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다(서울고법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

는 구성한 편집물 중에서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19호).

저작권법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그 제작자의 인적, 물적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작을 완료한 때 발생하여 그 다음 해부터 5년 동안만보호된다(제95조).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2008.1.1.부터 기산하여 2012.12.31.까지 보호 된다.

Q5. **(영상저작물/계속적간행물)** 추억의 TV드라마〈수사반장〉은 1971.3. 6. 첫 방송을 시작해 1989.10. 12. 막을 내리기 까지 18년간 880회가 방송된 국민드라마였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될까?

수사반장은 영상저작물로서 880회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한 다음 회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기산은 매 회 공표 시로부터 기간하여 계산한다.

수사반장은 매 회 다른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각 회별로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축차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계속적간행물에 관한 제43조의 규정에서 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과 같은 공표기산주의적용 저작물과 달리 영상저작물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71.3.6. 첫 방송된 제1회 작품의 경우 1972.1.1.부터 기산하여 70년이 되는 2041.12.31.까지 보호되며, 마지막 작품은 1990.1.1.부터 기산하여 2059.12.31. 까지 각각 보호되다.

Q6. (일반저작물/계속적간행물) 한국을 대표하는 대하소설〈토지〉는 박경리(1926.10~2008.5) 작가가 1969.6. 집필을 시작하여 1994.8.30.에 마무리한 역작이다. 총5부 25편에 달하는 이 소설은 연재기간이 26년에 달할 정도로 길어 여러 지면을 통해 연재되었다. 1973년 첫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래 다양한 출판도 되었다. 이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Q3 사례와 같이 계속적간행물이라고 하여 무조건 공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소설〈토지〉는 여러 연재 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발표된 순차저작물로 볼 수 있으나, 저작권법상 원칙에 따라 박경리 작가의 사망시점을 기산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를 비롯하여 박경리 작가의 다를 작품들도 모두 2009.1.1. 일부터 기산하여 70년이 되는 2078.12.31.까지 저작권은 보호된다.

Q7. (외국 어문저작물) 일본 유명 소설가 A의 작품을 번역하여 출판 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가 1963년이라면 국내 출간 시 언제까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해당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니 아니한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일본에서 저작 재산권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이다.

본 질문의 경우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12.31.에 보호기간이 만료된다. 비록 우리나라는 사후 70년으로 보호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적용 시점을 2013.7.1.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허락 없이 출간이 가능하다.

Q8. **(외국 미술저작물)**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이다.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7~1954.7)' 작가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100년간 보호될까?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는 않으며, 우리나라의 보호기간을 적용하 여 70년간만 보호된다.

즉, 위 [Q7] 사례와 반대로 우리나라 보다 긴 보호기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보호기간 적용은 짧은 보호기간인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멕시코 자국에서는 1955.1.1.부터 기산하여 2054.12.31.일까지 보호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기간이 연장의 기준인 2013.7.1. 이전인 2004.12.31.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1955년+50년).

Q9. (저작인접권 도입전 공표된 음반) 록의 대부 신중현씨는 펄 시스터가 노래한 '커피한잔', '님아' 등이 담긴 〈펄씨스더 특선집〉(1968년) 등 본인이 1968~1987년에 만든 28개 음반에 대한 권리 주장을 당시음반제작을 한 박\*\*(2008년 사망) 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하였다. 1987년은 저작인접권이 도입된 시점인데 저작권은 유효할까?

음반을 일반저작물의 하나로 보았던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당시 음반에 대하여는 저작자 사후 3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옛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곡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로 새 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레코드'라는 상호로 음반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음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박씨에게 음반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씨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음반제작사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전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해당 음반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이 보호기간"이라며 "이사건 음반 저작자인 박씨가 2008년 이후 사망한 이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Q10. (해외저작물/업무상저작물) 월트디즈니(1901~1966)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1928년 〈증기선 윌리〉라는 단편에니메이션 영상 속에 등장한 것이 최초이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만료 시점은 언제가 될까?

미키 마우스 캐릭터는 〈증기선 윌리〉라는 영상저작물속에 나온 것인데, 따라서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월트디즈니(Walter Elias Disney, 1901.12. 5.~1966.12.15.)이나, 미국법상 고용저작물(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다.<sup>34)</sup>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업무상 저작물로 볼 경우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미국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 56년(28년+28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1984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1976년 개정법에서 이미 공개된 작품의 저작권보호기간이 75년(업무상저작물)으로 되면서 미키마우스는 다시 2003년(1928년+75년)까지 연장되었다.

그 후 1998년 소니보노 보호기간 연장법(So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에서 20년이 추가 연장되면서 현재 2023년까지로 된 상태이다. 다만, 이것은 미국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는

<sup>34)</sup>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저작권등록부에는 "저작물명「증기선 윌리」, 공표일「1928년11월21일」, 저작자 「월트디즈니」, 저작물의 종류 「영상저작물」"로 되어 있다 (박성호, "미키마우스 저작권의 보호기간", 법률신문 제2618호 14-15면).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만 보호되는 것이다.

한편, 국내사건으로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부착한 아동의류를 불법 제조해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u>미술저작물로 보고</u>35)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저작자를 월트디즈니 자연인으로 보고 그 사망시점을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하였다(서울지법 96고단10718판결).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개인 창작물로 볼 경우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보호기간은 월트디즈니가 사망한 1966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6.12.31.일까지로 봐야할 것이다.

Q11. (2차적저작물) 영국에서 1997년 제1편〈해리포터와 마법사의돌〉이 처음 발간된 이래 79개 언어로 번역돼 4억 5천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국내에서는 '㈜문학수첩'에서 1999년 번역판을 출판하였다. 국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될까?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국내에서는 '㈜ 문학수첩'에서 1999년 번역판을 첫 출판하였다. 영국에서 발간된 후 2년이 지나 국내에서 첫 출간되었고 〈마법사의 돌〉을 시작으로 2016년 〈저주받은 아이〉까지 8편의 작품이 출간되었다.

여덟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인 〈저주받은 아이〉는 2016년 7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연극의 대본집이었으나, 정식으로 8편으로 불리고 있다. 8편도 국내에서 2016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국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원작과 따로 기산된다. 한글 번역본은 영국 원작을 번역한 2차적저작물이고 우리 저작권법상 2차적

<sup>35)</sup>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기하여 보호된다고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에 기하여 보호한다는 식의 공소제기와 이를 그대로 인정한 판결은 법리오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성호, 위의 글).

저작물은 독자적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해리포터 시리즈 작품의 번역은 1편에서 3편까지 김\*\*씨가, 5편에서 7편까지는 최\*\*씨가 번역하였고, 4편은 두 사람이 공동 번역을 맡았다. 마지막 8편은 박\*\*씨가 옮겼다.

해당 한글 번역본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적간행물은 매 책의 공표 시로 하므로 각 편별 번역본이 공표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보호될 것이다. 따라서 1999년에 국내에서 첫 공표된 제1편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69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될 것이다.

Q12. (2차적저작물) 1938년 가수 박향림이 부른 "오빠는 풍각쟁이" 곡을 음악 경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해석(편곡)하여 연주하였다. 원곡의 작곡가인 김해송은 1950년 사망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편곡 버전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원곡을 편곡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다만, 2 차적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새로운 창작성은 일반적인 저작물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창작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36)</sup>

법원도 컴퓨터용 음악 편곡 사건(대법원99도863판결)에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며, 다소의 수정·증감만으로는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흔히 음악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원곡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완료된 경우 편곡 등 2차적저작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곡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편곡과정에서 새로운 창

<sup>36)</sup> 이해완, 앞의 책, 210쪽.

작성을 부여하였다면, 2차적저작물로서 독립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편곡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이 될 것이다. 다만, 2차적저작물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하여도 그 보호 범위에 대하여는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 요소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Q13. (사진저작물) 소나무라는 주제로 40년이 넘게 찍어온 유명 사진 작가 배병우(1950.5.22.~)는 한국을 대표하는 소나무 작가이다. 2005년 가수 엘튼 존이 그의 작품을 사가면서 유명해 지고, 이후 유명 인사들의 구매도 이어졌다. 그가 1975년에 공표한 사진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배병우 작가는 소나무, 바다, 산 등 한국적 정서를 상징하는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 카메라로 그림을 그린다는 평을 받고 있는 대표적 사진작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배병우의 소나무 사진집을 선물하기도 했다.

만약에 생존중인 배병우 작가의 작품 중 1975에 공표된 사진 작품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자 사후 70년을 적용해야 할까?

1957년 법에 따르면 사진저작물은 보호기간이 10년이었으며, 보호 기산점도 저작물이 처음 발행된 다음 해 부터였다.<sup>37)</sup> 따라서 1975년에 공표된 사진작품의 경우 1976.1.1.부터 10년이 되는 1985.12.31.에 보호기간이 만료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바뀐 1986년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976.12.31.이 전에 공표된 사진저작물은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sup>37) 1957</sup>년 저작권법 제35조(저작권의 존속기간) ① 사진저작권은 10년간 존속한다. ②(생략)

제40조(동전) 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한편, 1977년에 창작된 사진의 보호기간은 다음 해인 1978.1.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1987.12.31일에 만료되는데, 1986년 개정법은 1987.7.1.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게 된다.

참고로, 본 사안의 경우는 아니지만 1957년 저작권법상 사진의 경우에 다른 예술저작물을 찍은 경우나 학술·예술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을 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과 같은 보호기간이 부여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38)

Q14. (저작인접권/음반) 가수 김광석 1집 음반〈김광석1〉은 1989.9.20. 에 발매되었는데, 당시 적용되는 1987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20년만 보호되었고, 2009.12.31.에 해당 음반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지금도 해당 음반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된 것일까?

처음으로 저작인접권의 개념이 도입된 1986년 개정법(1987.7.1.시행)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었다. 이후 1994년 개정법(1994.7.1.시행)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면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1987.7.1.~1994.6.30. 사이에 발행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기간에 발행된 음반에 비하여 짧은 보호기간(20년)이 적용되는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조약 위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고, 결국 2011년 개정 저작권법(2013.8.1.시행)에서 부칙(제4조)을 두어 위 기간(1987.7.1. ~ 1994.6.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하게 되었다.

<sup>38) 1957</sup>년 저작권법 제36조(저작권의 존속기간)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 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권과 동일한 기간 내에 존속한다.

회복되는 보호기간은 대상 저작인접권이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김광석 제1집 음반은 1990.1.1.을 기산점으로 하여 50년이 되는 2039.12.31.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참고로 김광석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저작인접권) 관련한 유족간 소송은 2008년 대법원에서 미망인과 자식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 론을 내린 바가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2130 판결)

Q15. (업무상저작물)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뽀빠이(Popeye)〉를 만든 미국의 만화가 엘지 세가(Elzie Crisler Segar, 1894.12.8. ~ 1938.10.13.)는 1929년에 뽀빠이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 캐릭터 그림을 활용한 만화책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간하고자 한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뽀빠이 캐릭터는 1929년 신문 만화로 첫 등장을 하였으며, 1933년에는 만화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엘지 세가는 1919년에 현재 뽀빠이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 King Features Syndicate, Inc.의 전신인 International Features Service, Inc.에서 만화를 시작했다.

1929년 첫 만화가 나올 때 세가는 뉴욕시의 New York Journal 이라는 신문사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법상 업무상저작물(work for hire)에 해당되는지는 정확치 않다고 한다.39)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보호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저작 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기간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된다.<sup>40)</sup> 현재에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고 미국 내에서 2024년(1929년+95년)까지 보호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sup>39)</sup> Gene Quinn, "Popeye Falls into Public Domain in Europe" (January 5, 2009), IPWatchdog.(http://www.ipwatchdog.com/2009/01/05/popeye-falls-into-public-domain-in-europe/id=1345)

<sup>40)</sup> 미국저작권법 제302조(c)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럽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럽의 경우 개인 창작물로 보아 저작자 사망 후 70년을 적용하여도(1938+70) 이미 만료되었고, 우리나라도 1988년(1938+50)에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뽀빠이 캐릭터를 이용(부정경쟁 및 상표적 사용은 예외임을 주의)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괜찮으나, 미국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Q16. (해외 사례 1) 몇 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생일 축하곡 〈해피버스데이 투유(Happy birthday to you)〉곡에 대한 저작권 분 쟁이 미국에서 진행되었고, 오랜 법적분쟁 끝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 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2015.9.22.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생일 축하 노래〈해피 버스데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sup>41)</sup>. 이 노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이 유효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판결은 음악출판사인 워너/채펠 뮤직(Warner/Chappell Music)이 120년된이 노래를 사용한 영화제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한 데 따라 제기한소송의 결과이다.

이 곡의 멜로디는 1893년에 밀드레드 힐(Mildred j. Hill)과 패티 힐(Patty Smith Hill) 자매가 작곡한 〈Good morning to all〉이라는 곡이었으나, happy birthday to you 란 노랫말을 누가 붙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힐 자매는 이 노래의 저작권을 1893년 음악출판사 '클레이턴 F 서미'에 넘겼고, 1935년에 저작권 등록이 이뤄졌다. 이후 1988년 워너 뮤직 그룹이 2500만달러에 권리를 사들여 자회사인 워너/채펠을 통해 저작권 행사 해왔다. 소송에서 원고는 워너/채펠이 이 노래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저작권료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sup>41)</sup> Good Morning To You Productions Corp et al v. Warner/Chappell Music Inc,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No. 13-cv-4460.

소송에서 워너는 힐 자매의 출판사를 통해 저작권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George H. King 판사는 "이 노래의 원작자들이 어떤 출판업자(클레이턴 F 서미)에게 가사의 판권을 양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출판사는 이 노래의 가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기때문에 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피고 측은 그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고 했다. 또한 "1935년 클레이턴 F 서미가 등록한 저작권은 특정 버전의 편곡 본에 한해서만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Q17. (저작인접권/실연자) 가수 A가 1989년에 부른 노래에 대한 저작 인접권(실연권)은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보호기간은 각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음반의 경우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음의 고정일이 아니라 음반의 발행일이다(법 제86조).

우리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되면서 기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어느 법이 시행 중일 때에 공표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보호기간이 다르다.

실연자(가수)인 경우,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고 그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987년 개정법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을 한 때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1994년 개정법부터 2012년 개정 까지는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2012년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서 1987.7.1.부터 1994.6.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였다.

본 사례의 경우 실연이 1987년 개정법의 시행일(1987.7.1.) 이후, 1994년 개정법의 시행일(1994.7.1.) 이전에 실연을 한 경우이므로, 1987년 법에 따라 실연을 한 때부터 20년간 보호받게 되어 1989년 가창한 노래에 대한 가수의 저작인접권은 2009년까지 보호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2012년 개정법 부칙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 특례에 따라 50년의 보호기간이 인정되어 2039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Q18. (회복저작물) 1985년 당시 국내에서 보호되지 않던 미국 작가의 소설을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해 오고 있었다. 최근 이 책의 저작자 와 출판권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는 출판사로부터 출판 중지를 요청받았다. 계속해서 출판할 수 없는 걸까?

1987.7.1. 시행 저작권법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되, 그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소급해서 보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계저작권협약(UCC)이 발효된 1987.10.1.이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하였다.

이후 외국 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WTO/TRIPS 협정이 1995.1.1.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1996.7.1.시행 저작권법)하여 기존에 보호받지 못하던 1987.10.1.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중 저작자가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받도록 하였는데 이를 '회복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WTO/TRIPS 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보호받게 된 회복저작물은 기존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만큼, 저작물 이용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동법 부칙 제4조 제1항)를 두었다.

즉, 이 협정이 발효되던 1995.1.1.이전에 외국저작물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배포·공연·상영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1995.1.1.이전에 이미 번역되어 출판되던 책이라면 계속해서 출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자는 1999.12.31.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동법부칙 제4조 제3항),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은 지급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통과 제리 캐릭터 사건]

원심은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소재 주식회사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가 고양이와 쥐를 의인화한 톰과 제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tom & jerry"라는 제목으로 각 회마다 독립적인 줄거리를 이루면서 횟수가 연속되는 만화영화를 계속적으로 창작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위 미국회사의 허락 없이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인 톰과 제리 (이하 톰앤제리라고 한다)를 복사하여 이를 부착한 티셔츠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만화영화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등장인물인 이른바 캐릭 터를 복제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위 <u>톰앤제리 캐릭터는 세계저작권협약(u.c.c.)의 대한민국 내 발효일인</u> 1987. 10. 1.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로서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 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톰앤제리의 연속저작물 중 위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새로 창작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공표된 종전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어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새로이 창작된 톰앤제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中略)

또한 일련의 연속된 특정 만화영상저작물의 캐릭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전의 캐릭터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의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톰앤제리 캐릭터가 1987. 10. 1. 이전의 캐릭터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할 정도의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톰앤제리 캐릭터가 1987. 10. 1. 이후에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회복저작인접물 사례)

### [판결의 요지]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을 소개받아 1990년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의 매니저를 통해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한 다음,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음원을 제작한 때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 丙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음원을 담은 CD음반과 DVD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CD음반과 DVD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음원 제작 당시 乙은 甲에게 DVD음반과 같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방식의 음반 제작에 동의하여 음원에 관한복제, 배포, 전송 등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丙은 저작권법상 실연권자인 乙의 동의나 권리의양도 없이 DVD영상물을 제작・판매함으로써 乙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조의 음원에 관한 <u>구 저작권법(1994.1.7.법률</u>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u>실연권은 음원을 제작한 1990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2010.12.31.까지만 존속</u>하였으나 현행 저작권법 부칙(2011.12.2.)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u>존속기간이 50년으로 연장</u>되었으므로, 丙은 1990년의 다음 해부터 50년이 되는 2040.12.31.까지 DVD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자 2012헌마770 결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 [결정의 요지]

- (1)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그 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간의 차등 대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으며 달리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없다. 청구인이 가졌던 기존 보호기간에 대한 신뢰에 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투자회수를 위하여 2년간 기존 음반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사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보호기간의 만료와 2차적저작물의 관계를 다룬 성경저작물 사건)

[판결의 요지]

(전략)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판)"(이하 "1961년판 성경"이라 한다)이 현재 피고가 발행하고 있는 성경이고,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비교하여 볼 때,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바로 잡은 부분이 약 31곳이나되고, 번역을 달리한 것이 약 200여 곳이나 되고, 문장과 문체를 바꾼 것이 약 370곳이나 되고, 음역을 달리한 것이 약 37곳이 되고, 국어문법과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한 것이 약 100여 곳이나 된다고 인정한다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내에서 이차적(2次的)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인 피고의 정신적 노작(勞作)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피고가 1956년에 1952년판 성경을 어법에 맞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고, 오기를 바로잡고, 외국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를 약간 다르게 하여 발행한 것이어서 1952년 판 성경과 다른 별도의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이와 동일한 저작물이고 1952년판 성경의 저작권 존속기간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 3916호로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상 30년이므로 이와 동일한 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역시 1982.12.31.이 경과함으로써소멸하였으므로 그 저작권 소멸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하 생략)

#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상표권등록과 저작권보호기간 적용)

[판결의 요지]

(전략)

[3]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 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5. 12. 6.) 제3조는 '제3조 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 서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 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 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복저작물에 관 한 저작권법 규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사실상 이용하여 오던 자라도 과 거 외국인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음으로써 누렸던 지위를 1996. 7. 1. 이 후부터는 상실한다는 의미이므로, 1996. 7. 1.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외국 인의 저작권이 아직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전의 것이어서 상표법 제53조에서 정한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이라는 유효한 독립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는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 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회복저작물로서 1996. 7. 1. 부터 새롭게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만,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국내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1996. 7. 1. 이전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는 갑 회사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하 생략)

# Ⅲ. 별첨 - 법령 및 조약

# [1] 저작권법상 보호기간 규정 관련 연혁 입법

# ○ 1957년 저작권법

[시행 1957.1.28.] [법률 제432호, 1957.1.28., 제정]

제14조 (귀속권) (생략)

제15조 (공표권) (생략)

제16조 (원장유지권) (생략)

제17조 (변경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권리는 영구히 존속한다.

제30조 (동전) ①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간 및 사후 30년간 존속한다.

②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사망자의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제31조 (동전) 저작자의 <u>사후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u>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간 존속한다.

제32조 (동전) <u>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권</u>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간 존속한다. 단 기간 내에 저작자가 그 실명의 등록을 받을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 (동전) <u>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사회단체가 저작자로서 발행</u> <u>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u>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간 존속한다.

제34조 (동전) ① 저작권자가 원저작물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 그 번역물을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번역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기간 내에 저작자가 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어의 번역물을 발행할 때에는 그 국어의 번역권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35조 (동전) ① 사진저작권은 10년간 존속한다.
  - ②사진술에 의하여 적법으로 예술상의 저작권을 복제한 자는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 내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제한에 따른다.
- 제36조 (동전)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 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권과 동일한 기간 내에 존속한다.
- 제37조 (동전) 사진에 관한 규정은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저작물에 준용한다.
- 제38조 (동전) 영화제작권은 독창성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결한 것에 있어서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다.
- 제39조 (존속기간의 시기)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기간을 계산함에는 저작자사망의 해 또는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한 때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 제40조 (동전) <u>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u> <u>익년부터 기산</u>한다.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 제41조 (동전) ① 책호를 따라 순차로 발행하는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 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매책 또는 매호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부분식순차로 발행하여 전부 완성한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최종부분을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3년을 경과하고 아직 계속의 부분을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으로서 최종의 것으로 본다.

# ○ 1986년 개정저작권법

# [시행 1987.7.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부개정]

### [개정내용]

- <u>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보완</u>하여 외국인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u>상호주의원칙에 입각</u>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제 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 외국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함.
-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u>보호기간은 외국의 입법 예에 맞추어 사망 후</u> 50년까지로 함.
-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u>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u>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u>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u>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의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 2. 제1항의 기간 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 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공표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제39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 제36조제1항 단서·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 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 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절과 제77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 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 제70조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존속한다.
  - 1.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 2.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 3.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

제77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u>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u>음반</u> 또는 녹음필름 2.~5. (생략)
-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저 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u>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u>
  -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 ○ 1994년 저작권법

# [시행 1994.7.1.] [법률 제4717호, 1994.1.7., 일부개정]

## [개정내용]

-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 보호함.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기존과 동일〉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기존과 동일〉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기존과 동일〉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기존과 동일〉

제39조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기존과 동일〉

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기존과 동일〉

제70조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1994.1.7.>

- 1.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 2.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 3.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질 1995년** 개정 저작권법

# [시행 1996.7.1.] [법률 제5015호, 1995.12.0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1995.1.1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종전에는 외국인의 저작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것에 대하여서도 보호하도록 함.
- <u>단체명의 저작권 및 영상저작권의 저작재산권</u>은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되 창작 후 1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 속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u>창작 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u> 연장하여 국제적인 보호수준으로 조정함.
-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1995.12.6.>
  -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정 1995.12.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 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 (보호기간의 워칙) 〈기존과 동일〉

-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의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 2. 제1항의 기간 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1995.12.6.>

제39조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기존과 동일〉

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기존과 동일〉

- **제61조 (저작인접권)**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1995.12.6.>
  -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다.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라.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 2. 음 반
  -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 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3. 방송
  -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 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 는 방송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u>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u> (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u>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u>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 제4조 (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회복 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 다.
  - ②회복저작물 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 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③회복저작물 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 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

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006년 개정 저작권법

# [시행 2007.6.29.] [법률 제8101호, 2006.12.28., 전부개정]

### [개정내용]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법 제86조) <u>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u>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 전문개정으로 조문위치 변경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기존과 동일〉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기존과 동일〉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기존과 동일〉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기존과 동일〉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기존과 동일〉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기존과 동일〉

제86조 (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 ②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 등에 대 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 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제7조(생략)

제8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제10조 (생략)

# ○ 2011년(1차) 개정 저작권법 [시행 2011.7.1.] [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 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후략)
- [개정내용]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안 제39조)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2011.6.30.>
-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1.6.30.>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 진 경우
  -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 이 있는 경우
-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 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6.30.>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기존과 동일〉

제86조(보호기간) 〈기존과 동일〉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u>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u>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u>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011년(2차)저작권법

#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FTA이행)

## [개정내용]

- <u>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86조제2항)</u>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13년 8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 <u>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안 부칙 제4조 신설)</u> 저작인접권 보호의 공평성을 회복하고, 관련 국제조약 규정을 충실하게 이 행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 록 함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u>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u>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u>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u>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 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 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 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음반·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 [2] 주요 조약별 저작권 보호기간 관련 규정

□ 문학 .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고 1987년 12월 발효된 저작권분야의 중심적인 국제규범이다. 이후 모두 7차례 개정되었다. 발효 중인 것은 1971년에 개정된 파리의정서(Acte de Paris)로, 모두 38개조와 부속서 6개조로 이루어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리한다. 내국민대우, 최소보호의 원칙, 무방식주의와 소급보호 등 높은 수준의 보호를 선도해 왔다. 이협약을 보충하는 조약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있다.

### 제5조

- (1)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 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 (2)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 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 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 (3) 본국에서의 보호는 국내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다만, 저작자가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본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에서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4) 본국은 다음과 같이 본다.
- (가)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국가. 서로 다른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여러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경우에는 입법상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국가

- (나)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후자 의 국가
- (다) 미발행 저작물 또는 최초로 어느 비동맹국에서 발행되었으나 어느 동 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자국 국민 인 동맹국. 다만,
- (i) 영상저작물의 제작자가 어느 동맹국에 주사무소나 상거소를 가지는 영 상저작물의 경우, 본국은 그 국가이고
- (ii) 어느 동맹국에 세워진 건축저작물 또는 어느 동맹국에 소재한 건물이 나 기타 구조물에 포함된 기타 예술저작물의 경우, 본국은 그 국가이 다.

### 제6조

- (1) 어느 비동맹국이 어느 동맹국의 국민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후자의 국가는 최초 발행일에 그 비동맹국의 국민이고 어느 동맹국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주는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최초 발행국이 이 권리를 원용하는 경우에 다른 동맹국은 최초 발행국이 부여한 보호보다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하는, 특별한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2) 전 항에 따라 생긴 제한은,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그러한 제한의 실시 전에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3) (생략)

#### 제7조

- (1)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 년이다.
- (2)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동맹국은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 제공된 때로부터 50년 후 또는 저작물이 만들어진 후 50년 내에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만들어진 때로부터 50년 후에 소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3)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의 경우에, 이 협약이 부여하고 있는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때로부터 50년 후에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가 이명을 사용하였으나 그의 신원에 의심 이 가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호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 한다.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의 저작자가 위 기간 동안에 신원을 밝힌 경우에, 적용될 보호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 한다.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0년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동맹국은 이러한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 (4)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u>사진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u>의 보호기간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그러한 저작물이 만들 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25년의 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된다.
- (5) 저작자 사망 후의 보호기간과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사망일 또는 각 항에서 언급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러한 기간은 언제나 그 <u>사망이나 사건의 익년 1월 1일에 시작</u>하는 것으로 본다.
- (6) 동맹국은 전 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7) 이 협약의 로마의정서에 구속되는 동맹국이 이 의정서의 서명 당시에 효력 있는 국내 입법으로 전 항들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에, 그 동맹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때에 그러한 기간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8) <u>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u>. 다만,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의 2

전 조의 규정은 <u>공동저작물</u>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저작자의 사망일 로부터 기산하는 기간은 최후 생존자의 사망일로부터 기산한다.

#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 기존의 베른협약의 실체규정, 로마협약의 주요부분에 더하여 컴퓨터프로그램과 편집저작물의 보호와 대여권을 도입하고 있다. 음반과 실연에 대해서도 소급보호를 적용하고 있다.

## 제12조 (보호기간)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허락받은 <u>발행의 역년의 말로부터 최소 50년간, 또는 저작물의 제작 후 50년 이내에 허락받은</u>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

# 제14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 1.~4(생략)
- 5.이 협정에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가능한 보호기간은 <u>적어도</u> 고정이 되거나 또는 실연이 이루어진 역년의 말로부터 50년 기간의 말까지 계속된다. 제3항에 따라 부여된 보호기간은 <u>방송이 실시된 역년의</u> 말로부터 적어도 20년간 계속된다

□ 로마협약 (Rome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1961년 WIPO 전신인 지재권보호를 위한 국제무국이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교육문화기구와 함께 마련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위한 국제협약으로 1964년에 발효되었다. 내국민 대우와 최소보호의 원칙은 베른협약과 같지만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소급보호는인정하고 있지 않다.

제14조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의 기간은 <u>다음의 연도 말로부터 기</u> 산하여 적어도 20년의 기간 말까지 존속한다.

- a. 음반 및 음반에 수록된 실연에 대하여는 고정이 이루어진 해
- b. 음반에 수록되지 않은 실연에 대하여는 실연이 이루어진 해
- c. 방송물에 대하여는 방송이 이루어진 해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 WIPO Copyright Treaty)

아래 WPPT와 함께 WIPO 인터넷조약으로 불린다. 이 두 조약은 기존의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이 담아내지 못한 인터넷 등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연관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다. 공중전달권의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이 그것이다, 두 조약 모두 2002년에 발효되었다.

### 제1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 (1) 이 조약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설립 된 동맹의 동맹국인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동 협약 제20조 의미상의 특별 협정이다.
- (2) 이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 약에 의하여 체약 당사자가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 지 아니하다.
- (3) 이하에서 '베른협약'이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1971년 7월 24일 파리의정서를 말한다.
- (4)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의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를 준수하여 야 한다.

### 제9조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체약 당사자는 <u>사진저작물에 관하여 베른협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적</u>용하지 아니한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조약(WIPO 실연음반 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제5조 실연자의 인격권

- (1) (생략)
- (2) 제1항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적어도 재산 권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입법에 의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체약당사자가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 조약에 가입할 당시에 전 항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를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권리 중 일부가 그의 사망 후에는 존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3) (생략)

### 제17조 보호기간

- 1. 이 조약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음반에 고정된 연도의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 되는 해의 말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2. 이 조약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음반이 발행된 연 도의 말 또는 음반의 고정으로부터 50년 내에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고정이 행해진 연도의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 되는 해의 말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 세계 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886년에 베른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무방식주의, 저작인격권의 보호, 소급보호 등 높은 보호기준에 부담을 느낀 미국·소련·중국 등과 많은 개도국들이참여하지 않아 제2차 대전 후 유네스코의 주관으로 제네바에서 베른협약의참가국과 불참국이 함께 모여 이 조약을 체결했다. 1952년 마련되어 1955년발효하였다. 우리나라도 1987년에 가입하면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계기가 되었다. TRIPs협정이 베른협약 수준의 보호를 의무화하면서 현재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42)

# 제3조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기간이 제4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국가는 두 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 제4조

-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2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 2.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 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 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

<sup>42)</sup> 임원선, 앞의 책, 501쪽

- 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어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a) 및 (b) 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 3. 제2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다만,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 하는 체약국에서는, 이들 종류의 저작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1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 4. 어느 체약국도,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 령에 의하여,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호의 적용상, 어느 체 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 이 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다만, 특정 저작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 번째 이후의 기간 동안 당해 국가 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은 두 번째 이후의 기간에 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5. 제4항의 적용상,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6. 제4항의 적용상,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제네바 음반협약(Geneva Conventio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1961년 마련된 로마협약의 대안으로 탄생한 것으로 로마협약이 실연자와 방송사업자의 보호까지 포괄하고 있어 충분한 가입국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 보호가 시급한 음반의 불법복제를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WIPO주관으로 197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련되어 1973년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1987년에 가입하였다. TRIPs와 WPPT발효로 의의를 상실해 가고 있다.43)

### 제4조

보호기간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특정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당해 보호기간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년도의 말로부터 또는 음반이 최초로 발행된 년도의 말로부터 20년 이상이라야 한다.

<sup>43)</sup> 임원선, 앞의 책, 501쪽